

전주지방법원 2020. 8. 25 선고 2019가단19209 판결 [공사대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

변론 종결 2020. 8. 11

판결 선고 2020. 8. 2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3,999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1,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5. 1. 19. 피고, C, D, E, F, G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H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억 3,61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,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42,101,000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.

2. 판 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3,999,000원(= 9억 3,610만원 - 842,101,000원)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1) 피고는,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원고의 이사인 I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2015. 1. 13. 6, 000만원, 2015. 1. 30. 4, 000만원, 2015. 4. 15. 6, 300만원, 2015. 8. 22. 및 2015. 8. 24. 각 2,500만원 합계 2억 1,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사인 I에게 2015. 1. 13. 6,000만원, 2015. 1. 30. 4, 000만원, 2015. 4. 15. 6, 300만원, 2015. 8. 22. 및 2015. 8. 24. 각 2,500만원 합계 2억 1,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러한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I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는, 미지급 공사대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. 살피건대,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시기가 2016. 2. 24.인 사실이 인정되는데,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인 2019. 4. 2.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사자 중 1인인 F에게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, 2019. 7. 4.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2019. 4. 2.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(원고가 2017. 5. 19. 피고에게 한 이행 청구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).

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2019. 4. 2.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. 4. 2. 이후인 2016. 6. 9. 5,400만원, 2016. 6. 10. 1,500만원, 2016. 8. 24. 3,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, 위 각 돈은 피고가 아니라 I이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이유진